

의안번호	2209802
의 퇴 인	박범계의원
회 답 일	2025.6.9.
추계번호	25D212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개정안에 따라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규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8억 7,400만원, 2031년 20억 2,8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97억 5,100만원(연평균 19억 5,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필수적 대상사건(안 제5조제3항)	1,874	1,911	1,949	1,988	2,028	9,751	1,9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제3항(대상사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건이 필수적 대상사건인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	의무규정
2	안 제10조제1항(소규모 지원 관할 사건의 특례)	소규모 지원 합의부를 제외한 지방법원 지원에서 국민참여재판 실시	재량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5조제3항(대상사건)	○	
2	안 제10조제1항(소규모 지원 관할 사건의 특례)	×	미첨부: 소규모 지원을 제외한 지방법원 지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방법원 지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시설 설치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 부칙에 따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309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추가로 실시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국민참여재판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법원이 제출한 비용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산출한 소비자물가상승률¹⁾을 적용하여 추계
- 안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방법원 지원에서의 국민참여재판 실시를 위해 배심원석 및 평의실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각 지원의 현재 상황에 따라 소요비용이 달라 일률적인 비용 산정이 어렵고,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지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규정되므로 시설비 예측에 한계가 있어 추계에서 제외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대법원은 개정안에 따라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도입될 경우 연 309건의 국민참여재판 사건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연간 추가재정소요는 배심원후보자 일당·여비,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일당·여비, 배심원 식비, 격리수당, 국민참여재판 기본운영비임
 - 대법원에 따르면, 배심원 선정 절차는 각급 법원별로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로부터 일정 수의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통지한 후, 배심원 후보자 중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 － 배심원후보자에게 참석일수만큼 여비가 지급되고,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될 경우 재판종료 시각에 따라 여비가 지급되며 식비, 격리수당 등이 지급됨

1) 소비자물가상승률 (2025. 4.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	2.0%	2.0%	2.0%	2.0%	2.0%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배심원후보자 일당·여비

- 현재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에게 일당·여비로 60,000원을 지급하고 있음
-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연 평균 배심원후보자 소환 인원은 118명이고, 이 중 평균 출석인원이 28%인 34명이며, 출석한 배심원후보자 중 9명이 배심원으로 선정되므로 배심원후보자 일당·여비는 아래와 같이 산출됨

$$- \{60,000\text{원} \times (34\text{명} - 9\text{명})\} \times 1.4\text{일(참석일수)} \times 309\text{건} = \text{6억 2,300만원}$$

□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일당·여비

- 대법원은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에게 일당·여비로 재판종료 시각에 따라 재판당일 18시까지 12만원, 21시까지 16만원, 24시까지 20만원, 다음날까지 이어질 경우 24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대법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재판종료 시각별 비율은 아래와 같음

[표 2] 재판종료 시각별 비율

(단위: 건)

구분	18시 이전 종료		21시 이전 종료		24시 이전 종료		24시 이후 종료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9년	35	20.0%	66	37.7%	49	28.0%	25	14.3%	175	100%
2020년	19	19.8%	31	32.3%	31	32.3%	15	15.6%	96	100%
2021년	16	19.0%	20	23.8%	33	39.3%	15	17.9%	84	100%
2022년	23	25.0%	30	32.6%	33	35.9%	6	6.5%	92	100%
2023년	9	9.5%	47	49.5%	31	32.6%	8	8.4%	95	100%
2024년	21	23.1%	42	46.2%	22	24.2%	6	6.6%	91	100%
합계	123	19.4%	236	37.3%	199	31.4%	75	11.8%	633	100%

주: 단수조정으로 인해 합계액이 다를 수 있음

자료: 대법원

-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일당·여비는 아래와 같이 산출됨

$$- [\{(309\text{건} \times 19.4\%) \times 12\text{만원}\} + \{(309\text{건} \times 37.3\%) \times 16\text{만원}\} + \{(309\text{건} \times 31.4\%) \times 20\text{만원}\} + \{(309\text{건} \times 11.8\%) \times 24\text{만원}\}] \times 9\text{명(배심원수)} \times 1.4\text{(참석일수)} = \text{6억 7,800만원}$$

□ 배심원 식비

- 배심원 식비는 1일당 6,000원씩 2회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식비 지급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됨

$$- 6,000\text{원} \times 2\text{회} \times 1.4\text{일} \times 9\text{명} \times 309\text{건} = \text{4,700만원}$$

□ 격리수당

- 대법원은 현행법 제53조제1항²⁾에 따라 배심원·예비배심원·피고인 등을 격리할 경우 1인당 1일 10만원의 격리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대법원 의견에 따라 전체 사건 중 3%의 사건에서 격리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격리수당 지급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됨

– 10만원×9명×9건(진행 예상 건수 309건의 3%)×1일=800만원

□ 국민참여재판 기본운영비

- 대법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민참여재판 예상 건수는 259건이고, 이를 위해 배정된 기본운영경비는 3억 7,300만원이므로 1건당 기본운영경비는 약 144만원
- 매년 309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추가로 실시될 경우 소요되는 기본운영비 증가분은 아래와 같이 산출됨

– 144만원×309건=4억 4,500만원

- 개정안에 따른 2025년 기준 추가재정소요는 18억 100만원이고, 여기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산출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연간 추가재정소요는 아래와 같음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배심원후보자 알당 및 여비	648	661	674	688	702	3,373	675
배심원·예비배심원 일당 및 여비	705	719	734	749	764	3,671	734
배심원 식비	49	50	51	52	53	254	51
격리수당	8	8	9	9	9	43	9
국민참여재판 기본운영비	463	472	482	491	501	2,409	482
합계	1,874	1,911	1,949	1,988	2,028	9,751	1,950

주: 단수조정으로 인해 합계액이 다를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3조(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① 재판장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피고인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공정한 심리나 평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보호, 격리, 숙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규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97억 5,100만원(연평균 19억 5,000만원)으로 추계됨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개정안에 따라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지정으로 증가하게 될 국민참여재판건수를 대법원이 예상한 증가분을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지원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지원	02-6788-4664	img1@assembly.go.kr